#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581

발의연월일: 2024. 8. 6.

발 의 자: 차지호·김영배·임오경

이기헌・황 희・정성호

안규백 · 소병훈 · 이해식

김남근 · 정준호 · 임광현

신정훈 · 김윤덕 · 김우영

황정아 • 이재정 • 민병덕

허 영 의원(19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 및 기술개발의 산실로 서 최근 인공지능, 바이오, 소재 등 신소재·신산업의 육성에 대응하 여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에 국가 미래 전략의 연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한국과학기술원이 국가 미래 전략의 수립 등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한국과학기술원의 영문 명칭인 'KAIST'가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상황을 고려하여 법률에서 한국과학기술원의 영문 명칭을 표기하고, 한국과학기술원이 아닌 자가 해당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목적규정에 국가 미래 전략의 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한국과학기술원을 영문으로 'KAIST'로 표기하도록 하며, 한국과학기 술원의 영문 명칭에 관한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 임(안 제1조, 제2조, 제22조 및 제27조). 법률 제 호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원하기"를 "지원하며, 국가 미래 전략을 연구하기"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한국과학기술원은 영문으로 KAIST로 표기한다.

제22조 중 "한국과학기술원이라는"을 "한국과학기술원 또는 KAIST라는"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한국과학기술원"을 "한국과학기술원 또는 KAIST"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발전에	제1조(목적)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	
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	
를 양성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중·장기 연구개발과	
국가과학기술 저력 배양을 위	
한 기초·응용연구를 하며, 다른	
연구기관이나 산업계 등에 대	
한 연구지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창업을 <u>지</u>	<u>স</u>
<u>원하기</u>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	원하며, 국가 미래 전략을 연구
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기
제2조(법인) (생 략)	제2조(법인)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lt;신 설&gt;</u>	② 한국과학기술원은 영문으로
	KAIST로 표기한다.
제22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이	제22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법에 따른 과학기술원이 아닌	
자는 <u>한국과학기술원이라는</u> 명	<u>한국과학기술원 또는 KA</u>
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u>IST라는</u>
	<b></b> .

제27조(과태료) ① 제22조를 위반	제27조(과태료) ①
하여 <u>한국과학기술원</u> 의 명칭을	한국과학기술원 또는 KA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	<u>IST</u>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